인공지능산업 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 지원]

인공지능산업 지원은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제조 유통하는 산업으로, 영향력과 위험도에 따라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및 학습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집적단지·데이터센터 육성 등 인공지능산업 지원 시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지원 1
1. 인공지능산업의 이해 4
1.1. “인공지능산업”이란? 4
1.1.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4
2. 인공지능산업 지원 6
2.1. 창업지원 6
2.1.1. 창업 활성화 지원 6
2.2. 연구개발 및 학습용데이터 지원 12
2.2.1. 연구개발 지원 12
2.2.2. 학습용데이터 지원 13
2.3. 인공지능연구소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4
2.3.1. 인공지능연구소 지원 14
2.3.2. 전문인력 양성 지원 17
2.4.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지원 18
2.4.1. 중소기업 특별 지원 18
2.4.2. 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데이터센터 지원 21
3. 인공지능의 신뢰성 등 확보 24
3.1.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24
3.1.1. 신뢰성 확보 24
3.2. 인공지능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26
3.2.1. 투명성 확보 26
3.2.2. 안전성 확보 27
3.3.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 28
3.3.1.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확인 의무 28
3.3.2.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 29

1. 인공지능산업의 이해

1.1. “인공지능산업”이란?

1.1.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사업

“인공지능산업”이란?

▪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함)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

> ※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

인공지능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별도로 관리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함)의 분석·활용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함)의 의사결정
-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함)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인공지능사업자"란?

▪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위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 비교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이용자
정의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자	타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기업·기관
의무부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국내대리인 지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X(의무 없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10쪽>

Q. 회사에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했거나 외부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라도,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제공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인공지능산업 지원

2.1. 창업지원

2.1.1. 창업 활성화 지원

기업·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함)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정하는 사항
  - √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의 구축·실행을 위한 기기·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 √ 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 √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 √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비)인공지능 창업기업은 창업자 발굴부터 자금·교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table>
<tr><th>지원대상</th><th colspan="2">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딥테크 5대 분야*의 창업기업(3년 이내), 도약(3-7년 이내**으로서, 중앙정부 AI양성과정***수료자(23-25년 수료) 채용 예정인 기업</td><td>사업화 자금</td><td>-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정부지원사업비는 K-Startup 시스템 등록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사업계획서와 시스템 등록 내용이 다른 경우, 시스템 등록 자료를 우선함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자기부담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장 소재지(본점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우대 지역 구분
·지방우대 지역에 미해당하는 지역은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분류
·정부지원사업비 확정 및 지방우대 지역 확인 결과에 따라 자기부담 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창업 프로그램</td><td>-초기창업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table><tr><th>유형</th><th>프로그램</th></tr><tr><td>시장진입</td><td>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 ·글로벌 연계</td></tr><tr><td>투자유치</td><td>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IR 등 투자유치 지원</td></tr><tr><td>실증 검증</td><td>멘토링, 기술 실증 등 실증 ·검증 지원</td></tr><tr><td>자율프로그램</td><td>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역량을 투입하는 기관별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td></tr></table>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세부내용</th></tr><tr><td rowspan="2">필수</td><td>후속투자 유치</td><td>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td></tr><tr><td>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td><td>글로벌 IR 실증검증, 해외 투자유치 등 진출을 위한 준비 지원</td></tr><tr><td colspan="2">자율</td><td>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td></tr></table></td></tr>
</table>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사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
*** AI 교육프로그램: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중소벤처기업부), K-디지털 트레이닝(고용노동부),

> 폴리텍 하이트케(고용노동부)
> <출처: 2026년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40호) 참조>

인공지능 창업기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창업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활용을 위한 자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 그 밖의 부대수입

> ※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조합 등에 대해 출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 · 개인투자조합
> · 벤처투자조합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자
>
> Q. 인공지능 분야로 창업하려는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외에 일반 국민에게 투자받는 방법도 있나요?
>
> A. 네,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지분증권(주식)이나 채무증권(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 및 제117조의2).

인공지능 창업기업이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세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확인

▪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전단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문).

-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봄
-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100분의 100
>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 중 다음의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함)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위 2.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함): 유효기간 만료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s://ems.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AI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안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연구개발 및 학습용데이터 지원

2.2.1. 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 기업은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지원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공동 연구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연구·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제2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 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지원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1항).

-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 정부는 위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제1항).

>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 표준개발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알림-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s://ems.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AI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안내-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학습용데이터 지원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구축·활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개발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사업
- 인공지능서비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함)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사업
-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함)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 등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통합제공시스템 비용 징수 및 이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트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5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인공지능연구소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3.1. 인공지능연구소 지원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함)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제1항).

안전연구소의 수행 사업

▪ 위에 따라 안전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방법 연구
-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함) 관련 자문 및 교육
-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함)의 확보 및 공개
-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학·기업은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 대학, 기업 등 다음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함)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요건

▪ 위에 따라 대학, 기업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신청

▪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의 성명을 적은 서류
-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 정관 및 운영관리 규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취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0항 본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령, 정관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10항 단서 및 제11항).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

▪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기능별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인공지능연구소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제6항).

> ※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s://www.ko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 기업의 재직자·경영진은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제1항).

-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을 위한 사업

▪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제2항).

-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및 AI기술 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대한
>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알림-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제2항).

-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 표준화
-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 인공지능 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4.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지원

2.4.1. 중소기업 특별 지원

인공지능산업 관련 지원 시 중소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등 특별지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제1항).

> ※ “중소기업 등”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

-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등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에게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 포함)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지원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 1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 2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table>
<tr><th colspan="2">지원내용</th></tr>
<tr><td>지원규모</td><td>
<table>
<tr><th></th><th>예산</th><th>과제수</th><th>지원방식</th></tr>
<tr><td>도메인특화
AI모델개발</td><td>100억원 내외</td><td>16개 내외</td><td>자유공모
(품목지정)</td></tr>
</table>
</td></tr>
<tr><td>지원조건</td><td>
<table>
<tr><th></th><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th>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th></tr>
<tr><td>도메인특화
AI모델개발</td><td>최대 2년, 25억원 이내</td><td>75% 이내</td></tr>
</table>
</td></tr>
<tr><td>지원분야</td><td>
<table>
<tr><th></th><th>내용</th><th>품목</th></tr>
<tr><td>제품혁신</td><td>고객요구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 설계 자동화 AI 등</td><td>9개</td></tr>
<tr><td>매출혁신</td><td>수출개척, 납품관리, 시장진출, 고객지원 AI 등</td><td>9개</td></tr>
<tr><td>경영혁신</td><td>인적관리, 재무·회계 관리, 전략·경영 기획, 행정 자동화 AI 등</td><td>10개</td></tr>
<tr><td>리스크
혁신</td><td>정보보안, 안전사고 예방, 환경규제 대응,
법률·규제 자문 AI 등</td><td>8개</td></tr>
</table>
</td></tr>
</table>

<출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12호) 참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않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2.4.2. 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데이터센터 지원

인공지능 융합 및 지역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의 융합

▪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9조제2항).

▪ 위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9조제3항).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집적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함)를 지정해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기본계획 부합 여부
-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정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사실
-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및 구역
-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성명
-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3항 단서).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검·인증 등(이하 "실증시험 등"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 등"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 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기반 등을 구축하거나 개방한 실증기반 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함)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 ※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사업

분야	과제당 예산	지원 과제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국산 장비·SW개발·실증 지원	최대 4억	3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센터 국산 장비·SW 개발·고도화 및 실증 지원
			(지원대상) 데이터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솔루션을 보유하고, 개발·고도화 및 실증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친환경·고효율 장비·SW 개발·실증지원	최대 4억	1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친환경·고효율 데이터센터의 전환 유인을 위한 데이터센터 장비·SW의 친환경 기술 도입·실증 지원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SW 제품의 친환경 기술 도입·고도화 및 실증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	최대 1억	1개 과제	(과제내용)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 데이터센터 산업 현황 조사·분석
			(지원대상)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태조사 경험을 보유한 국내 기업, 기관, 협회·단체 등
데이터센터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지원	최대 1억	1개 과제	(과제내용) 협의체 운영(의견수렴, 정책발굴 등) 및 데이터센터 인식개선 활동 추진
			(지원대상) 정책발굴 협의체, 인식개선을 위한 세미나·홍보 등 운영 등이 가능한 국내 기업, 기관, 협회·단체 등

<출처: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381호) 참조>

3. 인공지능의 신뢰성 등 확보

3.1.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3.1.1. 신뢰성 확보

정부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

▪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 등”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 검·인증 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 검·인증 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 검·인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 등”이라 함)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 검·인증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검·인증 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 검·인증 등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
- 그 밖에 검·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검·인증 관련 정보 등의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음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검·인증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검·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
- 검·인증 등 관련 지원 사업
- 검·인증 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검·인증 등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AI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술 공급기업(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실증), 수요기업(실환경 실증수행) 등으로 구성된 단독 혹은 컨소시엄	기술을 활용해서 실증 및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실수요기관, R&D기관 등) 구성 및 운영 지원
	정보 R&D기술을 활용한 AI 역기능 대응 서비스 개발·제작, 실환경 실증 및 검증 관련 사업비 지원
	실증 결과물 활용(후속과제발굴, 상용화 등)을 위한 수요처 연결 및 후속 지원사업 연계 등

<출처: AI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33호) 참조>>

※ 인공지능 신뢰성(TAI) 향상지원 및 확보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공지능 기술 및 제품 보유 기업, AI활용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기업	인공지능 신뢰성(TAI) 향상지원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 획득, 혹은 이에 필요한 기술 지원·교육
	인공지능 신뢰성(TAI) 확보지원 -AI 기획, 개발 및 운영 과정별로 필요한 테스팅, 점검 및 방법론 교육
	지원기업 혜택 -기업 부담금 없음 -장비 무상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출처: 인공지능 신뢰성(TAI) 향상지원 및 확보지원 사업(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42호) 참조>

※ 인공지능 신뢰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https://cs.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인공지능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3.2.1. 투명성 확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사전고지 의무

▪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 등”이라 함)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 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제품 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 제품 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그 밖에 제품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제1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

▪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 고지 의무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사실조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2항·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2항·제3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고지의무,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Q. AI 챗봇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A. 시정명령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활용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AI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및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계 부처로부터 시정명령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 제40조 및 제43조제1항제1호).

3.2.2. 안전성 확보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제1항).

-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
>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을 것
>
> ·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 인공지능사업자는 위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제3항).

사실조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제1항·제2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고지의무,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3.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

3.3.1.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확인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신이 개발·이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

▪ 위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요청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결과 회신 기한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제품 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 절차

▪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 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요소

판단 요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가능	고영향 인공지능 제외
법정 영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영역(먹는물, 보건·의료, 원자력, 범죄수사·체포, 생체인식, 채용·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평가 등)	법정 영역에서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대상 아님
중대한 위험 초래	사람의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 통제권이 보장된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제외 가능(예외 있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16쪽>

3.3.2.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마련 등 강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 포함)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무 및 이행 내용

책무	이행 내용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정책과 조직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 결과와 이를 도출하는데 활용된 주요 판단 기준,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안전한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설계, 시험·평가,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 과정 전반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오류나 성능 저하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즉각적으로 통제 및 개입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확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어야 함
문서의 작성과 보관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위 조치들의 내용과 이행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뢰문서'를 작성하고 보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17쪽>

사실조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제3호).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향평가

▪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전단).

▪ 위의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후단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등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 반영)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완화·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지원데스크
>
> · 전화상담: ☎ 080-850-2546
>
> · 인터넷 상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https://www.sw.or.kr)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및 지정 사항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함)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제1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법 제1항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 한다)

국내대리인의 자격 및 책임

▪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제2항).

▪ 국내 대리인이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제2호).